

『구강보건 인력개발의 원칙』



파고다치과의원 원장

李 慰 之

구강보건인력개발(Dental Manpower Development)이란 국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구강보건인력을 생산하여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계획에 의하여 구강보건인력을 생산 하며, 생산된 구강보건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계속적 순환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국가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필요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진료보조원등 구강보건인력의 질과 양을 결정한 다음, 필요한 질량의 구강보건인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치학교육과 치과위생사교육훈련, 치과기공사교육훈련 및 치과진료보조원 교육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각종 구강보건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하며, 양성된 구강보건인력의 활용실태를 평가하여, 새로운 구강보건 인력계획을 계속 수정해가는 계속적 과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는 구강보건 인력개발을 치과교육개발, 치과위생사교육훈련개발, 치과기공사교육훈련개발, 치과진료보조원교육훈련개발로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동시에 각종 구강보건인력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구강보건인력 구조가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구강보건인력의 질은 영향을 미쳐, 구강보건의료 활동에 구강보건의료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고, 국민구강건강수준을 결정하며, 주로 양성과정에 결정된다. 그리고, 특성을 달리하는 지역사회는 각기 다른 내용과 질의 치과보건의료를 필요로 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나라마다 국가단위나 주 단위로 구강보건인력의 질적관리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치과의사 면허가 타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현상은 국가별로 치과의사의 질적관리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나라 안에서도 주별로 치과의사면허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별로 치과의사의 질적관리를 달리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강보건인력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강보건인력별 국가시험은 국가의 구강보건인력별 질적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고, 구강보건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에서는 양성하는 구강보건인력의 질적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구강보건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원칙이 자율적으로 준수되기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나라마다 국가수준의 치과교육 목적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서 치학교육을 하고 있고, 구강보건보조인력도 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국가수준의 치학교육 목적이나,

치과위생사 교육훈련의 목적, 치과기공사교육훈련의 목적, 치과진료보조원교육훈련의 목적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국가수준 치학교육의 목적은 물론, 국가수준 치과위생사교육훈련의 목적과 치과기공사교육훈련의 목적 및 치과진료보조원교육훈련의 목적을 설정하여, 구강보건인력의 생산과 활용을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구강보건인력의 양적 수급관리도 극히 어려운 문제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구강보건인력의 양적 수급관리기준으로 인구대율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계 각국의 인구대 치과의사의 비율을 검토해 보면, 개발국가는 물론이려니와, 한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인구대 치과의사 비율이 2,000내지 3,000명 정도이서, 우리나라에서는 치과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나, 양성된 치과의사의 고급 노동력마저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로는 치과의사의 포화상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 지역사회가 실제 필요로하는 구강보건인력의 질과 양을 구강보건행정계획에 따라서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하겠다)그러므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인구대 치과의사의 비율만을 단순히 비교해 보고, 치과의사의 양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결론하는 것은 옳은 결론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로 국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질과 양만큼의 구강보건인력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 낭비를 막는 길인 동시에, 구강보건인력 상호간자 과다 경쟁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방지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구강보건인력개발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대 치과의사의 비율만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구강보건인력의 수급을 결정할 경우에는 먼저 구강보건인력의 질적, 관리기준을 설정한 다음, 수요의 양을 결정하고, 여기에 맞는 공급계획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구강보건개발의 일환으로 구강보건개발에 적합하게 구강보건인력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장기종합 국가구강보건개발을 제대로 수립하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구강보건개발과 구강보건인력개발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념마저도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의료수요가 증가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선 치과의사의 생산성과 시술구강보건보조인력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증가되는 구강보건의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 치과의사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치과의사만이 구강보건인력인 것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개념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치과의사가 구강보건인력 중에서 대표적인 인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이제 구강보건보조인력을 보다 많이 양성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구강보건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구강보건의료수요 증가에 대처하는 방법”

1. 치과의사의 생산성 증가.
 - 1) 치과진료실의 효율적인 설계와 활용.
 - 2) 치과진료장비의 현대화.
 - 3) 인간공학(ERGO NOMICS) 적 원리와 방법의 도입
 - 4) 신기술의 도입.
 - 5) 비시술구강보건보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 6) 구강보건보조인력에게 위임가능한 업무의 위임.
2. 시술구강보건보조인력의 활용.
3. 치과의사 수의 증가.

금세기에 들어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곡, 교육이 확장되며, 건강의 개념이 변화되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구강보건의료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구강보건전문인력의 부족을 해결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앞의 표와 같은 구강보건전문인력이 부족할 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치과의사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시술구강보건보조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한 연후에, 치과의사의 수를 증가시키는 안이 제시된 것이다. 구강보건인력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치과기공사 양성기관을 과다하게 설치한다면, 과잉으로 배출된 인력의 활용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고, 과다하게 설치해 놓고 나서, 과잉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시험과정에 무리하게 국가시험합격율을 낮춘다면, 이는 큰 교육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가 되므로, 구강보건인력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구강보건인력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여, 구강보건인력 상호간의 협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총괄적으로, 구강보건인력개발을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을 첫째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추진해야 하고, 둘째 국가 구강보건개발의 일부로 추진해야 하며, 셋째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추진해야 하고, 넷째 구강보건인력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며 추진해야 하며, 다섯째 구강보건인력 계획 구강보건인력생산 구강보건인력관리의 계속적 순환 과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